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CONTENTS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신고가능

- 01 장애의 이해
- 02 장애인학대 알아보기
- 03 판례를 통해 보는 장애인학대 사례
- 04 장애인학대신고
- 05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



장애인학대신고, 왜 필요할까?

장애인학대는 장애인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행위로 고통을 주는 행위이며,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대 행위자

- ☑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취약성이나 권력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 학대 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가 많음

피해자

- ☑ 피해자는 장애로 인해 피해 사실 인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 ☑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본인 스스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주변 사람의 신고가 매우 중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로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햇님씨는 장애청소년 하늘이가 밤마다 몰래 휴대폰을 사용하고, 휴대폰에 집착하는 모습을 발견함. 햇님씨는 하늘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상담하던 중 하늘이가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신체를 짚은 사진을 보냈고, 이 사진을 빌미로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휴대폰에 집착하는 모습 발견



햇님씨는 하늘이와 대화



채팅으로 협박을 당한 하늘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인 햇님씨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에 피해사실 신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경찰 수사 의뢰, 조사 동행 등 피해자 지원 실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학대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

01

장애의 이해



01 장애란?

사전적 의미

- 신체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태도적, 환경적 장벽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2009년 1월 10일 발효

장애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개념
국가별로 장애에 대한 정의와 장애범주가 다름

01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리



장애인등록제
시행



장애범주
규정



장애인의 정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02 장애인이란?

장애의 종류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발달장애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지체장애	신장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장루·요루장애		
청각장애	호흡기장애		
언어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뇌전증장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하여 규정함



03 피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유형

지적장애인

지적 능력의 발달이 지연되어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지원이 필요

- ☑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추론, 문제해결, 추상적 사고, 판단, 경험에 의한 학습 등에 어려움 있음
- ☑ 장애의 정도가 같아도 개인별 차이가 큼

자폐성장래인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원이 필요

- ☑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 행동적 특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편차가 큼

정신장애인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어 지원이 필요

- ☑ 등록이 가능한 정신질환
 -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기질성 정신질환, 투렛증후군

03 피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유형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 등에 제약이 있어 지원이 필요

- ☑ 시각, 청각, 언어 등 여러 장애 유형이 중복으로 나타나기도 함
- ☑ 지적, 자폐성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음

청각장애인

귀의 청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음을 잘 듣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

- ☑ 청력에 따라 보청기나 인공와우 등을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수어 이외에 구화나 필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

언어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요인으로 부정확한 발음과 말을 더듬는 등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에서 학대행위를 금지



장애인학대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설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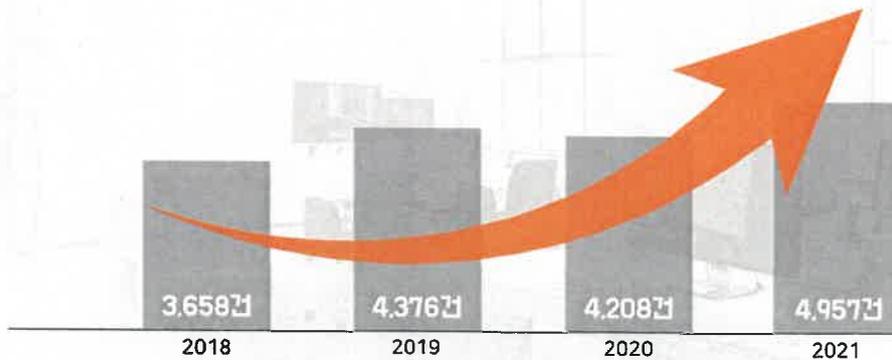


UN장애인권리협약에
학대에 대해 별도 조항을 두어
장애인의 인권 보장

제16조(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장애인학대 지속적 증가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

장애인학대 알아가기

01 장애인학대의 개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02 장애인학대의 특징

행위자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인, 고용주 등
피해자의 주변인이 대다수 차지

피해자

발달장애인* 70% 이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이 해당



발생장소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

집, 직장 및 일터, 사회복지시설, 상업시설 등

장애인학대 유형

*중복 학대: 하나의 사건에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반 되는 것



03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는 장애인학대로 살인, 폭행, 상해, 유기,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강요, 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 금지행위, 성매매강요 등이 포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가중처벌

상습범, 신고의무자가 자신의 보호·감독 등을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할 때

장애인학대피해자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

수사·재판 참여시 진술조력인 신청

범죄피해장애인 대상



04 금지행위



장애인복지법상 금지행위 및 벌칙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는 장애인학대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포함됨

금지행위(제59조의9)	벌칙(제86조)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장애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5 장애인학대 유형과 징후 : 신체적 학대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것으로 폭행, 상해, 감금 등의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신체적 학대 대표행위



- 손이나 발 등 신체나 도구를 사용해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체벌이나 기합
- 원하지 않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하는 행위(낙태, 문신, 불임 등)
- 장애인이 신체의 일부로 사용하는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작동시키는 행위



신체적 학대 징후

- 설명할 수 없는 상처와 멍, 물린 자국, 흉터, 골절, 화상 등의 상흔이 관찰될 때
- 특정 사람에 대한 접촉을 피하거나 두려워할 때
- 반복적으로 상처가 발생할 때

05 장애인학대 유형과 징후 : 정서적 학대

장애인에게 수치심, 모욕감, 따돌림 등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언어적· 비언어적인 방법의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 대표행위

- ☑ 협박, 위협 등으로 공포심을 주는 언어적 표현
- ☑ 때리려는 등의 행동으로 공포심을 주는 비언어적인 표현
- ☑ 지속적인 비하, 모욕, 조롱, 욕설



정서적 학대 징후

- ☑ 자해 등으로 인한 상처가 관찰될 때
- ☑ 평소와 다르게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지나치게 위축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 ☑ 우울증이 오거나 자해, 자기학대적 행동을 할 때

05 장애인학대 유형과 징후 : 성적 학대

장애인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장애인에게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대표행위

- ☑ 강간 또는 강제추행
- ☑ 성매매 강요
- ☑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 ☑ 성적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 ☑ 성적 행위나 신체 등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성적 학대 징후

- ☑ 설명할 수 없는 임신일 때
- ☑ 성기나 가슴 등 특정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출혈이 있을 때
- ☑ 이전과 다르게 성적 표현이 증가할 때

05 장애인학대 유형과 징후 : 경제적 착취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하여 재산 및 노동력의 착취, 재산적 권리의 침해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경제적 착취 대표행위

- ☑ 장애인을 속이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 ☑ 재산을 빼앗는 행위
- ☑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급해야 할 정당한 대가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경제적 착취 징후

- ☑ 일을 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의식주의 어려움이 있을 때
- ☑ 공과금 등 연체 독촉장 우편물과 채무 관련 전화가 지속적으로 올 때
- ☑ 소유한 돈이나 귀중품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 ☑ 금융거래 내용이 갑작스럽게 변경되거나, 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05 장애인학대 유형과 징후 : 유기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유기 대표행위

- ☑ 피해장애인을 고의로 남겨두고 이사를 가는 행위
- ☑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는 행위



유기 징후

- ☑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 악취가 날 때
-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있을 때
- ☑ 낯선 장소를 배회하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발견될 때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란?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동거인, 고용주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05 장애인학대 유형과 징후 : 방임

☞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와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기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는 행위

방임 대표행위



- ☑ 장애인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신변처리를 포함하여 의료적 지원을 소홀히 하는 행위
- ☑ 기본적인 교육과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방임 징후

- ☑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 악취가 날 때
-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있을 때
- ☑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등이 공적 급여나 사회서비스 연계를 거절할 때
- ☑ 상처, 염증, 욕창, 질병 등이 있으나 적절한 치료나 관리가 되지 않을 때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란?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동거인, 고용주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03

판례를 통해 보는 장애인학대 사례



01 사례 1_신체적학대

장애가 있는 지훈씨의 아버지는 지훈씨가 평소에 일 하지 않고 방안에서 휴대폰만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방에 누워있던 지훈씨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휘둘러 눈에 상처를 냄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아버지



지훈씨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휘두름



지훈씨의 눈에 상처를 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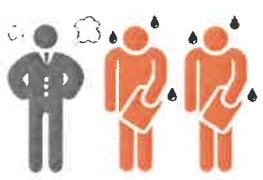
법원의 판결

아버지가 장애인인 아들을 때려서 상처를 낸 것을 장애인학대로 인정

01 사례 2_신체· 정서적 학대, 방임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원장은 근로자인 은수씨와 노을씨가 서로 다투자 작업장에 있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의 뺨을 때리고 싸우라고 강요함. 원장은 은수씨와 노을씨가 주저하자 은수씨의 뺨을 때리며 시범을 보임. 원장은 작업장 사람들에게 유통기한이 수개월 지난 식품을 식사와 간식으로 제공함

서로 싸우라고 강요, 뺨을 때리는 시범을 보이며 공포심 자극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식사와 간식으로 제공



법원의 판결

원장이 근로자에게 싸움을 강요하고(정서적 학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것(방임)을 장애인학대로 인정

01 사례 3_신체적학대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교사는 장애아동인 현서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습관적으로 입술을 깨문다며 손으로 현서의 입과 엉덩이를 때림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습관적으로 입술을 깨문



손으로 입을 때림



엉덩이를 때림



법원의 판결

어린이집 교사가 장애아동을 때린 행위를 장애인학대로 인정

01 사례 4_성적학대

나영씨의 이웃주민인 상훈씨는 나영씨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영씨 집에 찾아가 형광등을 갈아준다며 접근해 나영씨를 성폭행 함. 이후 상훈씨는 나영씨의 몸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집으로 찾아가



성폭행



스마트폰으로 신체를 촬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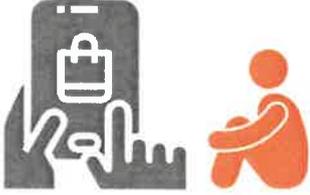
법원의 판결

행위자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을 한 것을 인정

01 사례 5_경제적 착취

정현씨는 지인인 세진씨가 장애로 인해 금전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자신이 재산을 관리해주겠다고 세진씨를 속여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또한, 세진씨에게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돈을 가로채 사용했으며, 세진씨 명의의 아파트 처분 권한을 일방적으로 넘겨받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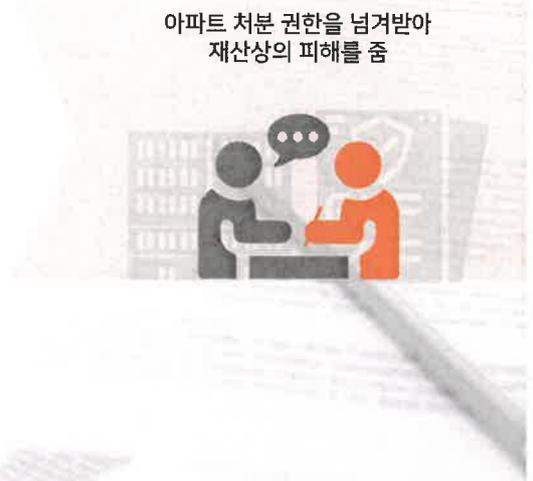
재산을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개인적으로 사용함



대출을 받게 하고 돈을 가로챈



아파트 처분 권한을 넘겨받아 재산상의 피해를 줌



법원의 판결

행위자가 장애인인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 사용한 것을 사기로 인정



04

장애인학대신고

01 장애인학대 인지와 대응

누가

- ☑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금지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됨

언제

- ☑ 장애인학대를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
 -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증거나 자료 확보하지 않아도 신고 가능

어떻게

- ☑ **1644-8295**
☎ 전화 / 💬 문자 / 🗨 카카오톡
- ☑ ✉ 이메일 / 📧 우편 / 📠 팩스
- ☑ 기관에 연락 후 방문



장애인학대 예방과 적극 대응의 첫 단계는 신고!



01 장애인학대 인지와 대응

인지

장애인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 가능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

대응

장애인학대 인지시 신속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장애인학대신고시 도움이 되는 정보

“ 신고자 관련 정보 ”

- ☑ 신고자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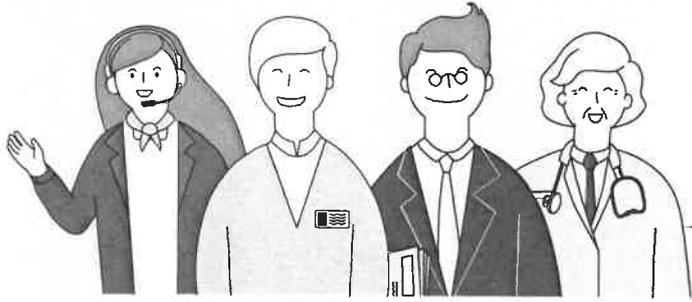
“ 피해자 관련 정보 ”

- ☑ 학대피해장애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 ☑ 학대피해장애인의 현재 상황
안전여부, 건강상태, 응급조치 필요성 등

“ 학대 관련 정보 ”

- ☑ 구체적 학대 내용
일시, 장소, 학대행위 의심자, 최초발생시점, 학대의 지속여부 등

0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장애인학대신고의무 부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장애인학대신고의무 불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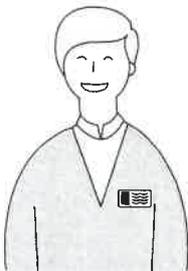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장애인복지법 제90조



0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사회복지 관련 직종 종사자



-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과 종사자
-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
- ☑ 장기요양요원 및 인정 신청 조사자
-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담당자
-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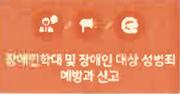
의료·응급구조 관련 직종 종사자

- ☑ 의료인
- ☑ 의료기사
- ☑ 119구급대의 대원
- ☑ 의료기관의 장
- ☑ 응급구조사
- ☑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0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교육·보육 관련 직종 종사자



- ☑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 ☑ 초·중·고·특수학교의 장과 종사자
- ☑ 학원의 운영자 및 강사, 직원
- ☑ 교습소의 교습자 및 직원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종사자

상담·보호시설 직종 종사자



- ☑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성매매지원시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 ☑ 가정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과 종사자
- ☑ 아동권리보장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장과 종사자
-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03 신고자 보호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금지

신고자
보호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공익신고자보호법

☑ 불이익조치금지

- 파면, 해임, 해고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계, 전근, 집단 따돌림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제86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변안전조치, 열람제한

☑ 공판절차에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 신청 가능

☑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제86조 제4항 제1호

☑ 공익신고자(장애인학대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람 등)는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 ☎ 1398, 청렴포털 www.clean.go.kr을 통해 상담 가능

04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



01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 ☑ 학대피해장애인의 발견 및 피해회복지원, 장애인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전국 17개 시도)

장애인학대예방과 방지의 의무(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

- ☑ 장애인학대신고체계 구축운영
- ☑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전국공통)

사후관리(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

- ☑ 사례종결 후 방문·전화상담 등을 통해 피해장애인의 안전확보 및 장애인학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지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01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01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신고접수

- ☑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 전화 / 💬 문자 / 📠 카카오톡으로 신고가능
-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접수
- ☑ 유관기관 연계, 경찰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
 - 학대에 관한 많은 정보(피해자, 행위자 관련)를 알려주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됨

조사

- ☑ 학대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사실 확인
- ☑ 학대발생지 및 관련 장소 내 조사
 - 피해장애인, 학대행위자 필수조사
 - 신고자, 목격자, 이웃 등 관련자는 필요시 조사
- ☑ 응급조치(의료기관 이송 및 심터 보호 등)

02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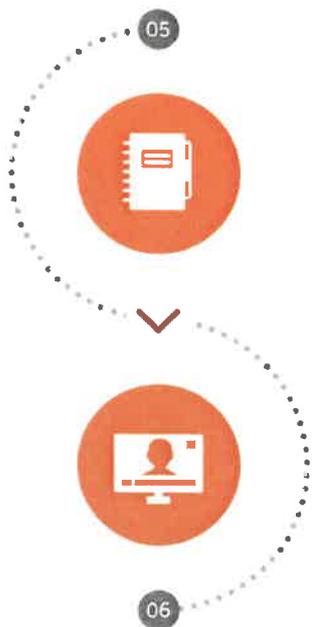
사례회의를 통한 학대판정

- ☑ 사례회의를 통해 학대 여부 판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판정은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판단)
- ☑ 필요한 경우,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학대판정

피해장애인 및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다양한 피해자 지원 및 연계

- ☑ 피해장애인의 의사와 욕구 존중
- ☑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실시
(지원의 범위나 방식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음)

01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사례종결

- ☑ 피해자 지원이 완료된 경우 사례종결

모니터링 실시

- ☑ 학대가 재발하지 않는지 확인



장애인지원센터를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주세요.

장애인지원센터
1644-8295

전화 / 문자 / 카카오톡

피해 장애인의
삶 회복



새로운 내일을
위한 기회

02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 어디서나 1644-8295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2-3453-9527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51-715-8295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53-716-8295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32-425-0900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62-716-1633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42-631-5667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52-260-8295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44-905-8295
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31-287-1134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31-851-1007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33-264-8296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43-287-8295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43-847-8295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41-551-8295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63-227-8295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61-285-8298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54-282-8295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55-603-8295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64-900-969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1644-8295

☎ 전화 💬 문자 TALK 카카오톡으로 신고가능

신고 시 가까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